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대통령령 제2987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입찰보증을"을 "입찰보증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을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을 "공공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보

-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4조의3의 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을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발주기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7장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에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제79조의3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2조의2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7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별표 1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12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를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填)하는 방법]공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보

별표 6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제목 중 "법 제82조제1항"을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법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14)바)부터 아)까지를 각각 사)부터 자)까지로 하고, 같은 14)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4조제9항에 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른 공사대금 청구・수						
령ㆍ지급에 관한 사항						
을 위반한 경우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위반행위란 중 "주지 않은 경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6)부터 20)까지를 각각 17)부터 21)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68조의4제1항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에 따른 통보를 거짓	제1항제11호						
으로 한 경우							

별표 6 제2호나목의 제목 중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목에 9)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	법	8개월	30	24	16	8	
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	제82조제2						
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	항제6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만 해당한다)							

-	
)ì	コクロのに チ
저	19525호
∠νι	1.7.1/11.4

1	0)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법	4개월	16	12	8	4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제82조제2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항제7호					
	경우						
	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법	8개월	30	24	16	8
	건설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	제82조제2					
	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항제7호					

별표 6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	拉	3개월	6,000만원	
준을 초과한 경우	제82조제1항제10호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유로 영업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별표 7 제2호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부터 거목까지 및 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자목, 차목, 타목, 파목, 거목부터 머목까지 및 어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아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3 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 을 초과한 경우	법 제99조제14 호		300만원	
카.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8조의2제 1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별표 7 제2호타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	법 제99조제7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	호의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				
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버.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법 제98조의2제2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호			
서.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제15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지 않은 경우	ই			

별표 7 제2호저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1조제3호"를 "법 제81조제3호·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34조의3, 별표 7 제2호사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자본금	
업종	기술능력	(개인역	인 경우 영업용자	시설・장비・사무실
			산평가액)	
토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ار (ا	10000 01 21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	개인	10억원 이상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개인	7억원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	" "	. , , ,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관

토목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건축	 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			
공사업	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			
	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			
	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	 개인	17억원 이상	
	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홍	/ II C	11 12 10	
	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산업 • 환경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설비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공사업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			
	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			
	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	개인	17억원 이상	
	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			
	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			
	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			
	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조경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홍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			
	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개인	10억원 이상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Ⅱ년	107 to 10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동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 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 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습식·방수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 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석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 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도장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 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 물해체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 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 ・창호・온 실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 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 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 리트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 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 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 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 우팅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4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 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 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 트용접(불꽃막대기용 접)·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중 1조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들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수중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 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이상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나. 공기압축기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 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각 200미터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이상
조경식재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3. 사무실 사무실
조경 시설물설치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 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4억원 이상	사무실

철강재설치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 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 닥면적이 2천제곱미 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 상)
	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 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삭도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 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3. 동력윈치(동력 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 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준설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 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기술이 출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기술이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 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 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
	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 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 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인 2명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스 (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 barge: 톱니바퀴달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및 개			
		인			
가스시설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시공업제1	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	및 개		2. 내압시험설비	
종	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	인		3. 자기압력기록계	
	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4. 가스누출검지기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5. 공기호흡기 또는 공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를 내보내는 마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			크	
	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6. 볼트 및 암페어미터	
	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전류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 절연저항측정기	
	사람 중 1명 이상			(500V 1천MΩ) 그 밖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			의 측정기[아들자캘	
	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			리퍼스(아들자	
	함한다)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			calipers: 아들자가	
	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달려 두께나 지름을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재는 기구) • 내외경	
	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			마이크로미터(내외경	
	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			미세측정기)・초음파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			측정기 • 다이얼게이	
	람			지(톱니바퀴식측정	
				기)・도막(도료 도포	
				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기밀시험설비	
시공업제2	사람 중 1명 이상			2. 자기압력기록계	
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			3. 가스누출검지기	
	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			4. 사무실	
	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				
	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가원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 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 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 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 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 람 	
가스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기밀시험설비
시공업제3	사람 중 1명 이상	2. 자기압력기록계
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가스누출검지기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	4. 사무실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	
	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	
	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	
	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	
	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	
	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	
	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	
	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 시공업제1 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 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2 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 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3 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 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및마이크로미터 1식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열에 견디는 정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시설물유지 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 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중 4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8. 사무실 1. 육안검사: 돋보기・ 망원경・카메라・비 디오카메라 및 균열 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
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
한 정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
정장비: 망치・체
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
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
사: 콘크리트전기저
항 측 정 장 치
(resistivity), 전위차
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 다.

-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 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 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3. 시설 · 장비 · 사무실
 -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위 표 중 제작장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 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을 적용한다.

-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 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 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제한기간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1회 해당	2회 이상 해당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4개월	8개월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개월	4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개월	8개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수급인 등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과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이 되는 합산 벌점을 정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별 자본금 기준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70퍼센트 정도로 낮추는 대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해당 자본금에 대한 담보제공 또 는 현금예치 요구 범위를 현행보다 최대 10퍼센트 정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대통령령 제29878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이하 "결합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다.
 - 1.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